이용계약 사항 안내 (잡은손시니어홈)

잡은손시니어홈 운영규정 제36조~제48조 발췌 | 경북 김천시 자산로 108-1 ☎ 054-432-2788

1. 계약 당사자 및 계약기간 (제39조)

계약 당사자	입소자 본인과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, 의사표시가 어려운 경우 가족·친척 등 법정대리인이 계약할 수 있습니다.
계약 기간	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, 비대상자는 양 당사자 협의로 정합니다. 기간 변경은 상호 합의로 가능합니다.
재계약	만료 1개월 전 시설이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며, 입소자(보호자)는 15일 이내 회신합니다. 회신이 없으면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됩니다(정원·등급 변경 시 예외).

2. 계약 해지 및 자동퇴소 (제39조 3항)

① 해지를 원할 경우 해당일 또는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 ② 입소자 수칙·계약사항 위반 시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지 가능

③ 자동퇴소 사유 : 감염병 환자로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정된 경우 / 타 입소자의 안전·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 / 이용료 2회 이상 연체(서면 최고 후 14일 내 미납 시) ④ 기타 사유는 시설장과 보호자 협의로 해지

3. 이용료 및 비용 부담 (제40조·제44조)

본인일부부담금	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기준으로 산정하며, 공단 홈페이지·시설 게시판·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합니다.
비급여 항목	식사재료비 1식 3,000원, 간식비 1회 500원 / 입원·통원 의료비 및 특별보호 비용은 입소자(보호자) 부담
등급 외 입소자	시설과 계약자 간 상호 합의로 이용료를 산정합니다.

4. 이용료 납부 방법 (제41조)

매월 이용료는 당월 10일까지 지정 계좌로 납부합니다(10일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 월 내, 최대 30일까지 납부).

납부 계좌 : 농협 301-0180-7867-01 (예금주: 잡은손시니어홈) | 개별 물품·용역 구입 실비는 별도 부담

5. 비용 변경 및 계약 갱신 (제42조·제48조)

변경 사유 : 물가 변동(비급여) / 장기요양 등급 변동 / 요양급여 수가 기준 변동 /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

변경 시 계약 갱신 최소 14일 전에 이용료 변경 내용을 입소자·보호자에게 통보하며, 계약기간·급여비용 등 주요내용 변경 시 계약서를 재작성(변경계약)합니다.

6.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(제37조·제38조)

시설의 의무	안전한 생활여건 조성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, 신변 이상 시 보호자 즉시 연락, 표준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
수급자 권리	사생활 존중·비밀 보장, 종교·문화 활동의 자유, 존엄과 평등한 처우,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 권리, 불편사항 개선 요구권
수급자·보호자 의무	월 이용료 납부,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, 건강 관련 자료 제공, 병원 입원 시 간호·간병 및 비용 부담, 서비스 제공에 협력

안내사항

본 안내문은 잡은손시니어홈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, 자세한 사항은 입소계약서(급여제공계약서) 및 운영규정 원문을 따릅니다. 문의: 잡은손시니어홈 ☎ 054-432-2788